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

1.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 평가 및 기본방향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 「5+3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추진된 결과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외형위주의 경영이 수익성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며, 비주력·한계 계열사를 정리하고 분사화 등으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있고, 알짜사업의 해외매각 등으로 외국인투자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부실계열사 정리 등 위기관리차원에서 이루어져 선단식 경영구조 및 관행의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에는 기업 스스로 선단식경영을 지양하고 개별기업단위의 독립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순환출자, 상호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등을 시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공기업 부문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쟁촉진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

▶ 추진배경

-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가공자본 형성을 통해 계열확장을 용이하게 하고 선단식 경영구조를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왜곡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해 '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시행
- '98년 2월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 전면 허용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위해 동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하고 내부지분율이 상승하면서 동일인이 적은 지분으로 다수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의 심화, 실질적 자기자본의 증가없이 명목상으로만 부채비율 감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부실계열사 퇴출 억제 등 각종 폐해가 발생

(단위 : 조원, %)

	출자총액	내부지분율				
		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사	자기주식	계
'98. 4	17.7	3.1	4.8	35.7	0.9	44.5
'99. 4	29.9	2.0	3.4	44.1	1.0	50.5

-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재벌개혁 3대 추가과제의 하나인 「순환출자의 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99. 12)
 - 출자한도 : 순자산의 25% 이내
 - 시행일 : 2001. 4. 1(시행일로부터 1년간 해소시한 부여)

▶ 추진계획

-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출자총액제한의 구체적인 예외인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
 -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해 설립된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기존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법인에 대한 출자, 임직원 인수방식(EBO, MBO)의 분사회사에 대한 30% 미만의 출자,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계열분리 과정에서 지분정리로 인해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이고 최다출자자인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지분을 30% 미만의 출자
- 출자총액제한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30대집단의 출자동향, 출자구조 등을 점검하고, 제도시행(2001. 4) 이전에 출자한도 초과분의 자율해소를 유도
 - 작년 기업이익의 대폭 증가에 따른 순자산증가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리없이 해소가능할 것으로 예상

'99. 6월말 기준 30대 기업집단 출자현황

(단위 : 조원, %)

	순자산	출자총액	순자산대비 비율	초과액
'99. 6월말 (대우제외시)	116.6조 (106.1)	35.0조 (29.0)	30.0% (27.3%)	13.6조 (9.8)

나.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 해소실적

- '98. 1월 「5대 원칙」 합의 이후 채무보증의 조기해소 노력의 결과 채무보증이 '97. 4월 33.6조원에서 '99년 말 4.3조원으로 대폭 감소
 - '98년 이후 금융기관장회의 등을 통해 중복·과다보증, 포괄근보증 등 불합리한 채무보증(약 12조원)을 조기에 해소

(단위 : 조원, %)

	'97. 4	'98. 4	'99. 12말	해소율('97. 4 대비)
1~ 5대	11.8	11.1	0.9	92.4%
6~30대	21.8	15.8	3.4	84.4%
합 계	33.6	26.9	4.3	87.2%

▶ 추진계획

- 1~5대 기업집단은 대체로 시한(금년 3월)내 해소가 가능할 전망
 - LG, SK : 기해소, 현대(600억원) : 금년 3월까지 해소 가능
 - 대우(6,800억원) : 워크아웃약정상 채무보증 이행청구권을 소멸키로 합의
 - * 삼성(1,300억원)의 경우 피보증회사(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로 별도 대책 필요
- 6~30대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시한내 해소를 적극 독려
 - 중복·과다보증은 금융기관과 기업간 합의를 통해 해소
 - 회사채보증은 피보증회사의 신용등급이 높거나 보증회사의 부실로 보증실익이 없는 경우 조건없이 해소 추진
 - 기한내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법정관리 기업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책 강구
- 어음배서 등을 통한 변칙적 채무보증과 타기업집단과의 교차채무보증 등 탈법행위를 집중 감시

다. 부당내부거래의 근절

▶ 추진배경

- 선단식경영의 주요수단으로서 한계기업의 퇴출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98. 5월부터 4차에 걸쳐 조사 실시
 - 총 20조원의 지원성거래를 적발하여 1,845억원의 과징금 부과하였고, 특히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교차지원 등 지능화된 부당내부거래를 적발·시정
- 부당내부거래가 이해관계자에 의해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되도록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를 도입('99.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 추진계획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점검
 - 이사회 의결대상인 내부거래의 규모, 주요 공시사항 등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반영
 - 기업들의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해 엄중조치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 발생을 사전 억제
-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하여 시정
 - 공정위의 내부거래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공시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집중 조사

라. 공기업부문의 경쟁촉진

▶ 추진배경

-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조사·시정하여 자회사 구조조정의 계기 마련
 - 수의계약을 통한 자회사 지원, 선급금·가지급금의 과다지급, 부당인력지원 등 부당지원행위 적발 : 총

3,933억원의 지원성거래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37억원) 부과

-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및 채무보증 관행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개정하여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99. 10),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해소상황을 「투자기관 경영평가항목」에 반영('99. 12)

-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등 10개 공기업의 시공·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지연, 거래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시정
- 가스공사 민영화방안에 「가스수입 및 도매부문 경쟁도입」, 「주배관망 공동이용제 실시」등의 경쟁촉진요소를 반영

▶ 추진계획

- 공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
 - 작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공기업(8개) 중 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내부거래가 많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 공기업의 우월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관행 및 제도 개선
 - 공기업과 거래하는 600여개 시공업체·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실태,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하고, 조사 결과 범위반사례가 많은 10개 내외의 공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추진
- 향후 민영화되는 공기업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여 민영화계획에 반영토록 추진
 - 통신·전기·가스 등 망산업분야에서의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허용방안
 - 민영화시 독과점 폐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기업결합심사 강화

2. 독과점시장구조 및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

☒ 기본방향

국제적인 대형합병추세를 감안하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심사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독과점시장구조 및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한다.

가. 시장구조의 독과점화 방지 및 개선

(1) 기업결합심사를 통한 독과점형성의 방지

▶ 기업결합 동향

- 정보화·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거대기업간 대형합병(Mega-merger)이 확산
 - 미국, EU 등의 경쟁당국은 시장규모의 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거대합병을 승인하는 경향

- * 시티코프·트래블러스간 합병, 다임러벤츠·크라이슬러간 합병 등
- 그러나 자국시장에서 독과점을 형성하여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합병은 엄격한 조치를 부과
- * BP Amoco와 Arco간 합병에 대해 법원에 합병절차 중지명령 제기(2000. 2)
- 국내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최근 기업결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년 연속 15% 내외의 증가율 기록
 - '98년에는 수평결합이 크게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구조조정에 치중하였음을 반영
 - '99년에는 우리경제의 신인도 제고에 따라 외국기업에 의한 혼합결합이 크게 증가
 - *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 '98년 132건(74억불) → '99년 168건(87억불)

유형별 기업결합 현황

(건, %)

연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증가율)
'97년	78	80	260	418(6.4)
'98년	172	107	207	486(16.3)
'99년	150	75	332	557(14.6)

-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결합이 예외인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를 승인하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조건 부과
 - * 현대의 기아자동차 인수 : 국내가격인상율이 수출가격인상율 이하로 유지되도록 제한

▶ 추진계획

- 시장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시 해외경쟁상황을 충분히 고려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외국기업의 신규진입 등으로 활발한 경쟁이 예상되는 경우 경쟁제한성 판단시 이를 반영
 - 그러나 신규진입, 해외경쟁도입 등이 어려워 경쟁제한의 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시정조치
- 부실기업매각 등 구조조정관련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의 방지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강화
 - 매각절차 진행후 사후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저해를 예방
 - 효율성 증대효과가 장기적으로 가격인하 등을 통해 소비자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결합을 승인

(2)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

- 특정산업 보호 지원시책의 추진 등에 따라 많은 업종에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화
 - '99년도 시장지배적 품목 129개중 최근 5년이상 계속 지정된 품목이 99개(전체의 76.7%)
-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 고착화된 20여개 품목에 대해 '97년부터 독과점 요인이 되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시책 추진

【주요 개선내용】

- 자동차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전속거래관행 개선 유도
부품가격 소급인하, 자동차 구입강제 행위 시정
- 타이어 : 권장소비자가격제도 및 수출승인제도 폐지
납품·출고량 담합,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등 시정
- 철 강 : 철강업체와 고철납품업체와의 전속거래관행 개선
시장점유율 및 가격담합,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시정
- 가 전 : 형식승인제도, 권장소비자가격제도 개선
입찰 및 가격담합,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시정
- * 철강사업자 및 단체에 총 163억원, 에어컨사업자 및 단체에 총 266억원의 과징금 부과
-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추진할 계획
 - 통신산업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방해, 배타적거래 등을 통한 독점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안 강구
 - 금융산업중 독과점 폐해가 예상되는 업종의 시장구조 개선방안 강구

나. 관행화된 담합행위의 근절

▶ 배경 및 실적

- 담합은 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시장경제질서 정착에 걸림돌이 되므로 선진 각국은 이를 강력히 규제
 - OECD는 가격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카르텔에 대해 엄중 제재를 권고
 - 미국은 비타민 제조회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7억3천만불의 벌금 부과('99. 5)
- 우리의 경우 법률에 의한 카르텔 허용과 고질화된 담합관행 등으로 경제 전반에 담합이 만연
 - 특히, 공공공사 입찰의 경우는 연간 30~35조 규모의 공공공사가 대부분 담합에 의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87% 수준('97)에서 낙찰
 - * 낙찰율 10% 하락시 3조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 '99. 2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법상 용인되어 온 20개 카르텔을 정비

【주요내용】

- 단체수의계약 품목 축소, 보험요율 공동결정 폐지, 수출입 물품 가격·물량 조정제도 폐지 등 11개 카르텔 정비
- 세무사, 변호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 폐지
 - 카르텔이 폐지된 분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99. 6. 12월) 결과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 보수 수준은 안정화
 - *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보수가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다양화
- 건설공사 입찰담합 방지대책 추진

- '98. 8월 조달청 등 8개 대규모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률 90% 이상, 낙찰가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입찰관련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제도화 : '99. 4월 낙찰가 100억원 이상으로 대상 확대
- 담합사실이 적발된 28개 대형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105억원의 과징금 부과 :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적격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
- 이러한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로 입찰담합이 크게 줄어 공공공사 평균 낙찰률이 '97년 87%에서 '99년 74%로 저하 : 건설업체들은 담합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개최('99. 6. 18)
- 업계의 자정노력을 감안하여 대통령 은전조치 단행 : '99년말 이전의 담합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벌점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 해제
- 공산품 가격담합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에어컨제조 7개사 및 사업자단체가 장기간에 걸쳐 조달청 납품 입찰담합, 생산수량 및 가격담합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266억원의 과징금 부과
 - 맥주제조 3사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빌미로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11억원의 과징금 부과

▶ 추진계획

- 대통령 은전조치 이후의 입찰담합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
 - 고액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입찰참가제한 요청 등의 조치도 병행
 - 공정거래법상의 자진신고자 면책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담합행위 신고를 유도
- 사업자단체의 담합행위 감시 강화
 - 규제가 폐지·완화된 60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내부규정 정비여부 및 음성적인 담합행위 지속여부 점검
 -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법정카르텔이 폐지된 분야에서의 담합행위 여부 조사 : 금년 4월부터 자율화되는 자동차보험요율의 담합, 보수카르텔이 폐지된 회계사·변리사 등의 은밀한 카르텔 여부 등
 - 정부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한 경쟁제한행위 시정 : 단체표준인증과정에서의 신규사업자 등 부당차별행위(67개 단체), 중고자동차매매업단체(22개)의 각종 신고업무상의 불공정행위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한 담합감시를 강화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경쟁사업자가 감소하여 담합형성이 용이하게 된 분야(예 : 자동차 등)
 -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물가안정에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예 : 목욕료, 이발·미용료 등)

다.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

▶ 추진실적

-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은 경쟁촉진을 본령으로 하는 공정위의 주된 기능 중 하나임
- '99년에 주요산업의 진입제한, 수출입 관련 규제 등 12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에 상정·확정

- 건설업 검업제한, 복합운송주선업의 자본금 규제 등 5개 진입규제와 소금, 농약, 한약재 등 7개 수출입 관련규제 개선
-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99. 10월 총리훈령에 의거 공정위에 「규제개혁 작업단」을 설치·운영

▶ 추진계획

- 사건처리과정에서 범위만 행위의 원인이 된 경쟁제한적인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
-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
(예) 최소자본금, 사무실, 인력 등 불합리한 인·허가기준
- 지자체·외청·정부투자기관 등 일선기관의 규제까지 개혁대상을 확대
 - 계약금액의 일방적 조정 규정, 입찰자격을 특정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규제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의약품·주류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기본방향

중소기업간 경쟁촉진을 통해 체질강화를 유도하고,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우월적지위남용 등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토록 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체질강화

▶ 추진실적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65년에 도입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각종 문제점 야기
 - 경쟁없이 계약물량을 확보하게 되어 기술개발·품질개선 등 경쟁력 제고 노력 소홀
 - 경쟁입찰에 비해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가격이 높아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및 각종 비리 유발
-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촉진여건 마련
 - 단체수의계약 물품수를 3년에 걸쳐 매년 20%(52개)씩 축소하기로 하고 이를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반영('99. 2)
 - 품목수(개) : '98년(258) → 2000년(154) → 2001년(103)
 - 2002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여부 결정
 - '99. 6월 단체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된 52개 물품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가격하락, 수출증대 등의 효과가 나타남 : 이는 단체수의계약제도하에서의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음성적 비용이 절감된 반면,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주력한 데 기인

* 가격하락율 : 통신기기 Δ 42.5%, 우산 Δ 16.7%, 경찰모자 Δ 13%

* 수출증대 : 전선조합 등의 회원사의 경우 평균 10.1% 증가

▶ 추진계획

- 분사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영역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
 - '98년 이후 30대집단이 핵심역량집중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551개사가 분사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확대되는 한편 기존 중소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었으나, 분사기업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이 지속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분사기업의 위장계열사 여부, 모기업으로부터의 부당지원여부 등을 중점 감시하여 공정한 경쟁 유도
-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
 -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30%미만 출자는 출자총액제한대상에서 제외하여 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고,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연구개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행위를 허용
- 단체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과 관련된 조합 및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 추진실적

-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99. 4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주요내용】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금지
- 원사업자의 부도·파산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 연쇄부도 등 어음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매전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여 카드업계에 적극 권장
 - 하나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등이 '99. 10월부터 카드결제 실시
 - * '99. 11~2000. 1 기간중 카드결제실적 : 11개사 240억원
 - 앞으로 카드결제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이 확대될 전망
- 신고사건의 처리를 통한 불공정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직권조사방식으로 전환
 - 서면조사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3,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 실시('99. 6~9)
 - 범위반정도가 큰 6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범위반협의가 있는 731개 업체에 시정지도
 -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등 하도급대금을 자진지급하는 등 범위반의 사전예방효과가 가시화(424개 업체, 407억원) : 조사대상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범위반을 자진시정하는 등의 효과 발생

▶ 추진계획

- 서면조사대상업체를 2만개 업체로 확대하여 조사 실시(2000. 4~9)
 - 원사업자는 2/4분기, 수급사업자는 3/4분기중 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전산망에 입력·관리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방식의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카드사용실적이 높은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별점 감점 등
- 방송프로그램제작, 광고제작, 화물자동차운송 등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 현행 하도급법 적용대상 :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다.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횡포방지

- 유통업체간 경쟁심화에 따라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사례 빈발
- '99년 2차례의 실태조사 결과 경품·광고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판촉사원 파견 강요, 부당반품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 11개 백화점 및 9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14억원의 과징금 부과
- 금년에도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 대해 2차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상습적인 법위반행위를 적극 시정

4.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반 확충

☒ 기본방향

소비자의 선택이 생산방식과 내용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소비자중심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허위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되는 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과도한 경품제공 등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후견적 보호보다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시장에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한다.

가. 소비자 정보제공기능 강화

▶ 추진실적

-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99. 7)

【주요내용】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정보를 공정위가 고시하고 이를 사업자의 표시·광고에 포함토록 하는 중요정보고시제도 도입 : '99. 10월 소비자피해 사례가 많은 10개 업종에 대한 중요정보 고시

- * 증권투자업 : 종합주가지수 대비 실현 수익률, 환매가능시기 등
- * 장의업 : 수의원단의 원사 종류 및 구성비율 등
- * 학원운영업 : 수강료 환불여부 및 환불기준 등
- 사업자가 표시·광고내용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토록 하고 공정위는 필요시 이를 공개하는 광고실증제 도입
 - * (주)길택의 “모발영양샴푸” 광고 등 8개 사업자에 대하여 실증자료 요구('99. 9)
- 소비자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 * 대한잡업개발공사의 “동충하초” 광고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 발동('99. 9)
- 파이낸스사, 다이어트 운동기구, 이동통신업계의 허위광고 등 242건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

▶ 추진계획

- 소비자가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기능을 더욱 강화
 - 현재 10개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는 중요정보공개대상을 대폭 확대 : 실태조사를 통해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소비자피해가 많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
 - * 예식장업, 전문서비스업, 귀금속가공업, 자동차부품업 등
 -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서비스의 광고제한규정 등 소비자에 대한 정보전달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
 - 정부부처, 소비자보호기관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가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도록 「소비자종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
 - 표시·광고한 내용과 사업자 제출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실증자료를 적극 공개
-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부당 광고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
 - 체인점·대리점모집, 건강보조식품 등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광고 직권조사 실시
 - 시민단체의 감시망과 연계하여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감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련예산 4.4억원 신규 확보)
 - 의료·법률서비스 등 분야별 소비자그룹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소비자권의 침해행위 감시

나. 불특정 다수인이 관련되는 약관의 정비

▶ 추진실적

- 약관은 금융거래, 전기사용, 서비스업 이용 등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 정형화된 형식으로 인해 소비자가 그 내용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큼

-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고, 표준약관 보급을 확대
 - 일반이용자가 잘 모르는 리스거래약관, 변호사 수임약정서 등 253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권, 여행업 등 3개 분야에 표준약관을 승인·보급 : 상품권 사용잔액의 40%까지 현금반환이 가능토록 표준약관에 명시, '99. 12월까지 총 10개 분야에 22개 표준약관 보급

▶ 추진계획

- 복잡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불공정한 약관 사용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
 - 상반기중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약관 유형을 분석한 후, 하반기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정비
 - 경기장 및 각종 레저시설이용약관 등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실시
- 다수의 소비자나 영세사업자가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 약관을 승인·보급
 - 은행 여신거래 관련 약관의 정비
 - 공연장 입장권 및 외식업 프랜차이즈 표준약관 제정
 - 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위 승인 표준약관임을 표시하는 「표준약관 마크제」 도입

다. 과도한 경품제공 및 할인특매 등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IMF 경제위기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경품 및 할인특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폐지
- 규제완화 이후 과도한 경품제공 및 연중세일로 과소비 조장 등의 부작용 대두
 - * 백화점의 고가 경품제공 사례 : 고급승용차, 아파트당첨권 등
 - * '99년중 백화점의 평균 할인특매실시 기간 : 연간 150~200일
 - * 소비재출하증가율 : '98(△21.4%), '99(19.1%)
 - * 도소매판매증가율 : '98(△12.7%), '99(12.1%)
- 소비자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5.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기본방향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속정보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므로 전자상거래 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감시·시정하고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에 주력하도록 한다.

▶ 추진배경

- 인터넷·디지털 혁명의 진전으로 전자상거래는 향후 급속히 성장할 전망

(단위 : 억불, %)

	'98	'99	2003	연평균 증가율
전세계	770	3,400	10,700	69.3
미 국	587	2,157	5,414	55.9
한 국	3.5	21.7	96.1	93.9

자료 : WEFA

-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유통혁명」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통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
 -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됨에 따라 유통·재고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가격파괴 현상이 확산
 - * 미국 서비스 산업의 유통비용 절감율(OECD, '99년) : 은행(89%), 생명보험(50%), 소프트웨어 판매(97~99%)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대리점 등 전통적인 중간상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단순물류거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
 - 유통비용절감으로 인한 상품가격 인하, 소비자 선택폭의 확대 등으로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대
- 그러나 기존업체들의 방해와 소비자의 신뢰부족이 전자상거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최근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자를 중심으로 인터넷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 : 가전, 음반, 서적, 자동차의 인터넷 저가판매에 대해 기존업체들이 공급 중단 혹은 집단적 방해행위로 대응
 - * 선진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업체와 기존 유통망과의 갈등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통한 가격인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
 - 비대면거래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허위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많이 발생

▶ 추진계획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 : 제조업체가 인터넷 사업자의 저가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대리점업체들이 제조업체의 인터넷 저가판매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등
 - 전자상거래에 특유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제정
-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허위광고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시정을 강화
 - OECD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작년 12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채택·권고 : OECD 가이드라인 내용과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시행(2000. 1)
 - * 전자상거래업체에게 상호, 대표자명, 제품가격, 운송비용 부담 등 거래와 관련한 필요정보를 명시하도록 규정

- 소비자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 :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기준, 분쟁해결절차 등을 규정
-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 : 10일 이내의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인정,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등
-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에 「전자상거래 감시반」을 설치·운영 :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된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점 감시

6. 세계경제 통합추세에 따른 경쟁법 적용영역 확대

☒ 기본방향

세계시장의 통합에 따라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법 집행은 그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 반경쟁행위에 대한 대처노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 세계경제의 통합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로 국제적 차원의 경쟁이슈가 증가하면서 경쟁법 적용영역이 확대되는 추세
 - 외국에서 행해진 경쟁법 위반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자국 경쟁법을 역외적용
- '90년대 후반부터 역외적용 건수 및 벌금규모가 크게 증가
 - 미국은 비타민·흑연전극·라이신 등 국제카르텔을 적발, 13억불에 달하는 벌금 부과('96. 8~'99. 5) : EU는 15개 해운사의 가격담합에 대해 3억불(한국 해운 3사 6천만불 포함)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98. 9)
 - EU는 미국 항공기제조사간 합병에 EU 경쟁법 적용('97. 7) : 폴란드·체코 등 동구권도 외국기업간 합병에 대해 심사
 - * 우리 기업도 반도체·자동차 합병건을 미국·EU에 신고('99. 3~6)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들의 경쟁법 관련 사건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 착수
 - 외국기업간 합병의 신고 및 심사제도 도입방안 강구
 - * '99. 9월 한·미경쟁정책협의회시 우리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
 - 경쟁당국간 양자협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국제 반경쟁행위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 국가간 공조체제 마련